

조세재정 브리프

BEPS 2.0 - 주요 내용과 시사점

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jsan@kipf.re.kr

- 1 들어가는 글
 - 2 BEPS 2.0의 주요 내용
 - 3 평가와 전망
 - 4 시사점
- 참고문헌





요약

- ▶ OECD는 2019년부터 이전과 확연히 다른 방향의 BEPS 대응방안인 2-Pillar 접근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, 2020년 말까지 합의된 대안을 제시할 계획임
 - Pillar 1: 수요자 · 사용자가 거주하는 지역(the new nexus rule)에 다국적 기업 이익의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부여(the new taxing right)
 - Pillar 2: 다국적 기업 이익에 대해 최저한세(minimum tax) 부과
- ▶ 2-Pillar 접근법은 디지털 서비스 소비 · 사용 국가에 소득의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부여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안되었다는 장점이 있음
 - 한편 제도의 합리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제도가 복잡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,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음
- ▶ OECD는 세수효과가 세계적으로 1천억유로가 될 것이라는 추정치를 발표함
 - 기업의 조세회피 형태 감소에 따른 세수 증대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, 국제투자 허브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
 - 우리나라 소비재 산업의 경우, 고정사업장에 연계된 공급이 주류를 이룬다면 새로운 과세권 배분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
- ▶ 장기적인 대응방안으로 개별 국가들이 법인세를 축소하고 부가가치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
 - 법인세 회피 행태를 축소하고, 모든 형태의 재화 및 서비스에 동등하게 과세할 수 있는 방안임
 - 2-Pillar에서 제시한 방안도 법인세 수입의 일부를 소비지에 배분하는 방안임

※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'안종석, 「BEPS 2.0: 주요 내용과 시사점」, 『재정포럼』, 2020년 6월호(통권 제288호),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2020. 6.' 중 일부 내용을 발췌 · 요약한 것임

1 들어가는 글

- ▶ 구글, 애플 등 IT 분야의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 전통적 산업 분야의 기업들에 비해 상당히 적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
- ▶ OECD와 G20에서 이를 BEPS(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) 문제로 규명하고 2012년부터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, 2015년에 15개의 Action Plans로 구성된 최종보고서를 발표함

- ▶ 2015년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 발표 이후, 프랑스와 영국을 필두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는 등 개별 국가의 독자적 대응이 시작됨
 - BEPS 프로젝트가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
 - BEPS 프로젝트가 완료되어도 디지털 서비스 수요국이 디지털 서비스 기업의 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가지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음
- ▶ OECD는 2019년부터 이전과 확연히 다른 방향의 BEPS 대응방안인 2-Pillar 접근법(BEPS 2.0)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, 2020년 말까지 합의된 대안을 제시할 계획임

KIPF ISSUE PAPER

2 BEPS 2.0의 주요 내용

① 2-Pillar 접근법의 개요 - 추진과정과 특징

- ▶ 2-Pillar 접근법 논의는 OECD의 IF(Inclusive Framework on BEPS)에서 주도함
 - 2019년 10월, 11월에 Pillar 1과 Pillar 2의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시작함
 - 2020년 1월 29~30일 IF 총회에서 수정안을 발표하고, 2020년 말까지 합의된 대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힘
- ▶ Pillar 1에서는 물리적 실체(physical presence)를 중심으로 하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소비자·사용자(consumer·user) 거주지에도 세수입을 배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
 - 소비자·사용자 거주지로 정의되는 새로운 연계성 개념(the new nexus rule)을 도입하고, 이를 근거로 과세권을 부여함(the new taxing right)
 - 과세 대상 이익의 지역 간 배분을 위해 사전에 합의한 공식을 적용함
- ▶ Pillar 2에서는 저세율국을 통한 조세회피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됨
 - Pillar 2는 그동안 제외되었던 '실질적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'도 CFC 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짐
 - CFC 제도는 저세율국의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하여 조세회피를 하는 경우에 거주지 과세를 강화하는 제도임
 - 디지털 경제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활동이 실질적 사업활동이 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 사업활동 수행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음



② Pillar 1 통합적 접근법(Unified Approach)

가. 다국적 기업의 이익배분¹⁾

- ▶ Pillar 1 통합적 접근법에서는 전통적인 고정사업장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연계점이 있는 지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는데, 새로운 연계점은 소비자와 사용자가 거주하는 지역임
 - 새로운 연계점 기준에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용자 거주지도 포함하였는데 이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도 이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임
- ▶ 통합적 접근법에서는 다국적 기업 그룹 전체의 이익을 먼저 산출하고, 그 이익을 Amount A, B, C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과세권을 가진 지역에 배분함
 - 새로운 연계점 기준을 적용하여 배분하는 항목은 Amount A임
- ▶ Amount B는 통상적 이익(routine profit)을 의미하는 것으로, 고정사업장(PE)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마케팅 및 유통 업무에 대한 대가를 말함
 - 매출액 또는 총수입에 사전에 결정된(합의된)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

〈표 1〉 Pillar 1 통합적 접근법의 이익배분 원칙

(단위: 백만원, %)

구분	이익의 구분	이익배분 원칙	이익 산정, 배분액 산정
Amount A	초과이익 (residual or non-routine profit)	- 초과이익의 일정 비율 - 새로운 연계점이 있는 지역에 배분	- 이익 산정: 초과이익에 일정 비율 적용 - 이익의 배분: 공식을 적용하여 수요자 · 사용자 거주지에 배분
Amount B	통상적 이익 (routine profit)	- PE를 통해 수행하는 일반적 마케팅 활동 대가 - PE에 배분	- 이익 산정: 매출액의 일정 비율 적용 - PE가 있는 지역에 배분
Amount C	초과이익 (residual or non-routine profit)	- 초과이익 중 PE의 통상적 활동 범위를 벗어난 활동의 대가 - PE에 배분	- 이익 산정: ALP 적용 - PE가 있는 지역에 배분

자료: OECD(2020a), pp. 8~9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

- ▶ Amount A는 다국적 기업 그룹 전체의 이익 중 통상적 이익(Amount B)을 제외한 초과이익(residual profit 또는 non-routine profit)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
 - Amount A는 새로운 연계점이 있는 국가에 배분됨
 - 새로운 연계점에 이익을 배분하는 지표로 소비자액과 사용자 수가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임

1) OECD(2020a), pp. 8~9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

- 참고로 OECD는 통합적 접근법의 도입에 따른 세수효과를 계산할 때, 예시적으로 통상적 이익이 매출액의 10% 또는 20%이며, Amount A 비율이 초과이익의 20%인 경우의 효과를 분석하였음²⁾

▶ Amount C는 초과이익의 일부로 기존의 이전가격과세원칙, 즉 ALP를 적용하여 고정사업장에 배분함

- 고정사업장이 통상적인 마케팅 및 유통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활동을 하였을 때, 그 활동으로 인해 창출된 이익이 Amount C가 됨

나. 적용 대상

▶ 적용 대상 기업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BEPS 1.0의 Action 13에 따른 국가별 보고서 제출 의무가 적용되는 매출액 7억 5천만달러 이상인 기업이 유력함³⁾

- 국가별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들이 Pillar 1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될 것으로 보임

▶ 적용 대상 업종을 보면,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임

- 디지털 서비스: 온라인 검색엔진, 소셜미디어 플랫폼, 온라인 거래 플랫폼, 디지털 콘텐츠 스트리밍, 온라인 게임,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,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
- 고객에게 온라인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고도의 인적 개입 및 판단이 필요한 전문적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⁴⁾
 - 예: 법률, 회계,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 서비스 등

▶ 통합적 접근법은 소비자 산업에도 적용됨⁵⁾

- 소비자 산업: 자동차, 전자 및 가전제품, 화장품, 의류, 명품, 브랜드 음식료품 등
 - 기업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품의 조립 및 포장 등 필수적이지 않은 역할(non-essential functions)을 수행하는 재판매자(reseller)나 중개인(intermediaries)이 개입된 경우에도 적용됨

▶ 다음 산업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⁶⁾

- 중간재 산업
- 광업, 농업, 어업 등 채취산업(extractive industries)
- 금융서비스 분야와 항공을 포함한 국제운송 분야
 - 금융서비스 분야는 설립 및 운영이 정부에 의해 통제, 관리됨
 - 운송업의 경우에는 오랜 논의를 통해 과세권 배분 원칙이 확립되었음

2) OECD(2020b), p. 12.

3) OECD(2020a), p. 12.

4) OECD(2020a), pp. 10~11.

5) OECD(2020a), pp. 11.

6) OECD(2020a), pp. 11~12.



다. 추진 계획과 합의가 필요한 정책 이슈

▶ IF는 앞으로 논의를 계속하여 2020년 말까지 구체화된 합의안을 제시할 계획임

- 2020년에 합의된 추진방안이 나오면, 이를 시행하기 위해 협약, 협상, 개별 국가의 의회 승인 등이 필요하므로 2023년 이후에나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⁷⁾

▶ 실제로 제도화할 수 있는 정도의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많은 이슈들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, 제도의 골격을 형성하는 주요 정책 이슈 중에서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음⁸⁾

- 통상적 이익률, 통상적 마케팅 및 유통활동의 범위, 국가별·산업별 이익률 격차 반영 여부 및 방법
- 초과이익 중 Amount A의 비율, Amount A를 배분할 때 적용할 공식
-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
- 사업 라인에 적용 대상 사업과 배제 사업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적용 대상 사업의 이익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방법
- 이중과세 배제 및 분쟁해결 방법
- 세이프 하버(safe harbor) 제안에 대한 논의

▶ 2019년 말에 미국이 Pillar 1의 적용 여부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세이프 하버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하였음⁹⁾

-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안으로는 미국 상원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 이유인데, IF에서는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이후에 세이프 하버로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연기해 놓은 상태임

③ Pillar 2 최저한세(GloBE: Global Anti-Base Erosion)

▶ IF는 Pillar 2를 GloBE(Global Anti-Base Erosion)라고 부르는데, 국제소득에 대해 최저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최저한세(minimum tax)라고도 함¹⁰⁾

▶ Pillar 2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의 규칙으로 구성되는데, 하나는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최저한에 미달하는 경우 그 최저한과 국외 납부세액의 차이만큼을 거주지에서 과세하도록 하는 것임

- 최저한 세율은 앞으로 합의를 해야 할 이슈로, 유사한 제도인 미국의 GILTI(Global Intangible Low Tax Income)에서는 미국 법인세율(21%)의 절반인 10.5%가 최저한 세율임¹¹⁾

7) Deloitte(2020), p. 3.

8) 앞으로 합의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OECD(2020b)의 Annex A, pp. 22~24 참조.

9) OECD(2020a), p. 4, pp. 20~21.

10) OECD(2019a) 참조.

11) Pomerleau(2019) 참조.

- ▶ 국외에서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에 거주지에서 효과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규정이 필요함¹²⁾
 - 소득포함 규정(income inclusion rule): 실효세율이 최저세율 미만인 국외 자회사 소득을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모회사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
 - 전환 규정(switch-over rule): 국외 지점 소득에 대해 국외소득 면세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소득으로 전환
- ▶ Pillar 2를 형성하는 또 하나의 과세원칙은 국내 발생 소득을 국외로 지급할 때, 지급받은 자가 국외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최저한에 미달하면 원천지에서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임¹³⁾
 - 이러한 지급의 비용 공제를 부인하거나(underpayment rule),
 - 지급 시 원천징수세를 과세하고, 납세자가 적절한 세금 납부를 입증한 후에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방법(subject to tax rule)이 제시됨
- ▶ Pillar 2에도 몇 가지 중요한 정책 이슈가 합의해야 할 사항으로 남아 있음
 - 최저한세율
 - 적용 배제 기업의 규모와 업종
 - 최저한세를 국가별로 적용할 것인지, 국외 소득을 통합하여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

3 평가와 전망

① 2-Pillar 접근법에 대한 평가

가. 긍정적 측면

- ▶ 2-Pillar 접근법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디지털 서비스를 소비·사용하는 국가에 소득의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부여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안하였다는 점임
 - BEPS 문제는 디지털 서비스를 소비·사용하는 국가에서 소비·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데서 시작되었음

12) OECD(2020a), pp. 28~29.

13) OECD(2020a), pp. 29~30.



- 투자, 생산 등 사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
 - 새로운 연계점이 소비액, 사용자 수 등 기업이 왜곡할 수 없는 지표에 의해 결정됨
 - 기회비용 성격이 강한 통상적 이익을 제외한 초과이익 중 일부분을 새로운 연계점에 배분함
- ▶ Pillar 2가 계획대로 시행되면 다국적 기업 집단의 조세회피를 크게 억제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장점임
- ▶ IF 논의에 130개 이상의 광범위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므로, 합의된 결과의 영향력과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임

나. 문제점 및 우려

- ▶ IF에서 2-Pillar 접근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우려가 제기된 부분이 제도의 합리성¹⁴⁾
 - Amount A의 비율, 통상적 이익률, Amount A 배분공식과 산정요소 등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면 경제적 의미가 없는 단순한 수치나 공식에 불과함
 -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분쟁이 끊이지 않아 제도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임
- ▶ 또 다른 문제는 제도의 복잡성임
 - 통합적 접근법은 단순한 방식의 이익배분을 지향함
 - 그러나 실제 적용은 상당히 복잡하며 납세자의 납세협력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됨
 - 적용 대상 상품과 적용 대상이 아닌 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경우, 적용 대상과 대상이 아닌 사업을 구분하여 이익과 비용을 계산하여야 하는데,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도 의문임¹⁵⁾
- ▶ 마지막으로 합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
 - 경제 여건이 매우 상이한 국가들이 모여서 일치된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음
 -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과 전문가 집단은 고정된 비율의 합리성, 제도의 복잡성 등 문제를 제기하였음

② 협상 전망

- ▶ IF는 2020년 말까지 합의된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, 이를 위해 2020년 7월 G20 재무장관 회의와 11월의 정상회의를 통해서 진전된 내용을 점검받을 계획임

14) PWC(2019), pp. 18~22.

15) Ball(2020), p. 3.

- IF 협의를 주관하는 OECD 사무국은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획된 일정대로 협의를 진행한다고 발표함¹⁶⁾
- ▶ OECD가 계획된 일정을 고집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프랑스와 미국의 무역 분쟁일 것으로 판단됨
 - 디지털 서비스세 발 무역 분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2020년 말까지 합의된 방안을 도출해야 함
- ▶ 한편 계획된 시간 내에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 중 하나는 코로나19임¹⁷⁾
 - 개발도상국은 코로나19라는 중요한 사안에 대처하면서 동시에 IF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형편임
 - 이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정책 당국자들은 IF에서 논의하는 국제조세 이슈에 익숙하지도 않음
 - OECD가 주어진 일정대로 협의를 강행한다면 많은 개발도상국이 OECD 사무국에서 제시한 방안을 깊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인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
- ▶ 합의해야 할 사안이 많고 각각이 어려운 이슈들이라는 점도 협상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
 - 각각의 이슈에 대해 국가 간 의견이 대립될 수 있음
 - 예: 미국의 세이프 하버 방안
 - 2020년 말까지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개략적인 내용의-물론 현재보다는 진전된-합의만 도출하고 미결된 부분은 뒤로 미루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

4 시사점

- ▶ OECD에서 BEPS 2.0이 시행되는 경우 예상되는 세수효과를 추정하였는데, 세계적으로 1천억 유로의 세수 증대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¹⁸⁾
 - Pillar 1보다는 Pillar 2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
 - Pillar 2의 경우에도 최저한세를 적용하여 징수한 세수입 증대보다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조세회피 축소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됨
 - 최저한세제도가 도입되면 조세회피 전략의 실익이 축소되므로 저세율국을 활용한 조세회피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

16) Lomas(2020a).

17) Christensen(2020).

18) OECD(2020b) 참조.



▶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, 세수입 증대 요인도 있고 감소 요인도 있음

- 증대 요인: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공급하는 디지털 서비스와 소비재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받을 수 있음
- 감소 요인: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기업의 외국 납부세액이 증가한다면, 이에 따른 세액공제로 인해 국내 세수입이 감소될 수 있음
- OECD의 모의분석에서는 국제투자 허브 국가에서는 세수입이 감소하고, 그 외 국가들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¹⁹⁾

▶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전자, 자동차 등 소비재 업종 대기업들의 세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

- 이들 기업이 주로 유형 재화를 공급하는 기업들로 고정사업장에 연계된 공급이 주류를 이룬다면 새로운 과세권 배분의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음
- 최저한세의 경우, 거주지 세부담의 절반 정도를 최저한세로 납부해야 한다면, 우리나라는 법인세율(25%)이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
 - 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 평균은 23.52%이며, 36개 회원국 중 24개 국가에서 국세 법인세 세율이 우리나라 (25%)보다 낮음²⁰⁾

▶ 정부는 국가별 보고서 자료를 활용하여 적용 대상 국내 기업의 이익률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

- 이러한 분석 자료가 업종별·지역별 통상적 이익률, 초과이익 중 Amount A의 비율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된 방안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임

▶ 협상이 불발로 끝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움

- 현재로서는 2019년에 보여준 프랑스와 미국의 분쟁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
- 한편 독일과 북유럽 국가 등 상당수의 국가에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므로 디지털 서비스세의 확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
- 이 경우 OECD는 문제 해결을 위해 또 다른 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, 끊임없는 협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
- 현행 과세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부분적 보완을 통해 대응하기보다는 조세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
 - 예: 법인세 부담을 낮추고 부가가치세를 확대하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를 상당히 완화할 수 있음

19) OECD(2020b), p. 12.

20) OECD Data Base, 법정 법인세율, https://stats.oecd.org/Index.aspx?DataSetCode=CTS_CIT, 검색일자: 2020. 5. 12.

[참고문헌]

- 안종석, 「BEPS 2.0: 주요 내용과 시사점」, 『재정포럼』 2020년 6월호(통권 제288호),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2020.
- Ball, Bruce, “Tax and the digital economy: Significant concerns over OECD proposals,” February 27, 2019. CPA Canada 홈페이지, <https://www.cpacanada.ca/en/business-and-accounting-resources/taxation/blog/2020/february/oecd-digital-tax-proposals-concerns>, 검색일자: 2020. 5. 14.
- Christensen, Rasmus Colin, “The Impact of Covid-19 on global digital tax negotiations,” April 1, 2020. ICTD (International Center for Tax and Development) 홈페이지, <https://www.ictd.ac/blog/impact-coronavirus-global-digital-tax-negotiations-oecd/>, 검색일자: 2020. 5. 14.
- Deloitte, “Changes are round the corner: the OECD releases Pillar 1 and 2 update,” LT in Focus, January 31, 2020. Deloitte 홈페이지, <https://www2.deloitte.com/content/dam/Deloitte/ru/Documents/tax/lt-in-focus/english/2020/25-03-2020.pdf>, 검색일자: 2020. 5. 4.
- Hearson, Martin, “Corporate Tax Negotiations at the OECD: What’s at Stake for Developing Countries in 2020,” Summary Brief, No. 20., ICTD(International Center for Tax and Development), February 2020.
- Lomas, Ulrika, “Coronavirus Won’t Delay Tax Work, OECD Says,” Wolters Kluwer Tax-News, March 30, 2020a. https://www.tax-news.com/news/Coronavirus_Wont_Delay_Digital_Tax_Work_OECD_Says___97604.html, 검색일자: 2020. 5. 14.
- EC, “Digital Taxation: Commission proposes new measures to ensure that all companies pay fair tax in the EU,” March 21, 2018a, Brussels: EC Press release.
- _____, “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on the Common System of a Digital Services Tax on Revenues Resulting from the Provision of Certain Digital Services”, March 21, 2018b.
- OECD, Global Anti-Base Erosion Proposal(“GloBE”)—Pillar Two, November 2019a, Paris: OECD.
- _____, Statement by the OECD/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on the Two-Pillar Approach to Address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, January 2020a, Paris: OECD.
- _____,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– Update on the Economic Analysis and Impact Assessment, Webcast, February 2020b, Paris: OECD
- Pomerleau, Kyle, “What’s up with Being GILTI?,” March 14, 2019, Tax Foundation 홈페이지, <https://taxfoundation.org/gilti-2019/>, 검색일자: 2020. 5. 14.
- PWC, “Response to the OECD on the ‘Unified Approach’ under Pillar 1 on Digitalisation,” November 12, 2019, PWC 홈페이지, <https://www.pwc.com/gx/en/tax/pdf/oecd-pillar-1-pwc-response.pdf>, 검색일자: 2020. 5. 14.

<웹 사이트>

- OECD Data Base, 법정 법인세율, https://stats.oecd.org/Index.aspx?DataSetCode=CTS_CIT, 검색일자: 2020. 5. 1.

